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2895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에 양도된 C에 대한 2015. 11. 27.자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96291호)하여 2019. 9. 17. 'C은 원고에게 29,824,206원 및 그중 14,341,365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이 2017. 2. 2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자녀들 G, C이 있었다.

라. C과 피고를 비롯한 F의 상속인들은 2017. 3.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지분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하였고, 2017. 3. 24. 피고 앞으로 2017. 2.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 등의 악의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별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C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사업자금 등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기에 C이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C의 채무초과 상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8012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추진석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층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층 133.28㎡(면적제외), 1층 28.48㎡, 2층 내지 4층 각 85.13㎡

5층 71.88㎡, 옥탑1층 10.4㎡(면적제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177.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7.3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77.9분의 21.81 ㎡.

